

21-22 개정법령 퍼펙트 정리

대한민국 행정학 1위 김종규 선생정확

01. 정부조직법 (2021.8.9.시행)

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제 도입
* 탄소중립 등 에너지정책 담당차관 신설

	종전	개정
복수차관 부처	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총 6개	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총 7개

02.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

2-1. 공공기관 운영법 (2021.1.1.시행)

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정기준 변경

	종전	개정
법률	정원 50인 이상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
시행령	-	정원 50인 이상 총수입액 30억 이상 자산규모 10억 이상

2-2.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(2022.1.30.시행)

공공기관 중 시장형공기업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외

	종전	개정
시장형 공기업	한국광물자원공사 포함 총 16개 기관	한국광물자원공사 제외 총 15개 기관

03.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2.1.1.시행)

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실효성이 약화된 통계청 소속기관인 5개 지방통계청(경인, 동북, 호남, 동남, 충청)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

04. 공무원 노조법 (2021.7.6.시행)

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

- ① 직급 제한(6급이하) 폐지
- ② 소방과 교육공무원(교원 제외)을 가입대상에 포함
- ③ 퇴직공무원(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)의 노조가입 허용

내용	종전	개정
가입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 상당의 외무공무원(외무행정·외교정보관리직) ③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반직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(영사직렬·외교정보기술직렬),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(교원 제외) ③ 별정직공무원 ④ 위 ①~③에 해당하는 퇴직자 중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

05.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(2022.5.19.시행)

-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·관리하고,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려는 것임.
- ②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, 회피를 신청해야 함.
- ③ 부동산 취득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·매수시 신고해야 함.
- ④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그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.
- ⑤ 공직자나 직계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.
- ⑥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.
- ⑦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됨.

06. 국가재정법

6-1. 국가재정법 (2022.1.1.시행)

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

제27조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)

-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34조(예산안 첨부서류)

국회로 제출하는 예산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6-2. 국가재정법 (2022.3.22.시행)

- 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
- ② 기금 정비

내용	종전	개정
성과 중심 재정 운용	성과중심의 재정운용 (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음)	재정사업 성과관리 (기재부장관중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) 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 평가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④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·제출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 및 조직인사예산보수에 반영
금융성 기금	· 부실채권정리기금 · 구조조정기금 · 국가장학기금을 포함한 총11개	· 부실채권정리기금 · 구조조정기금 · 국가장학기금을 제외한 총8개

07. 지방세법 (2022.1.1.시행)

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을 확충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5.3퍼센트로 인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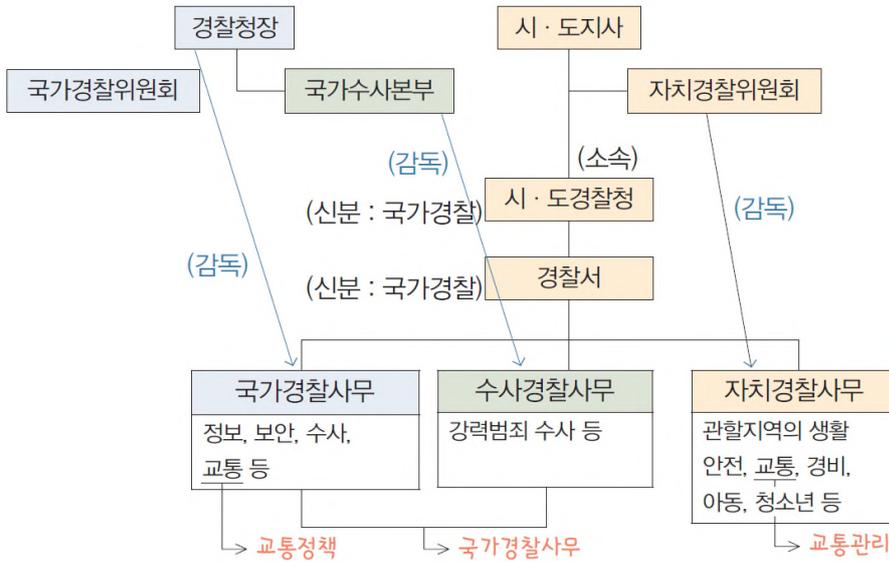
	종전	개정
지방소비세의 재원	내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%	내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5.3%

08. 경찰법 (2021.1.1.시행)

자치경찰제 전국적 시행

- ①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둠
- ②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함
- ③ 시·도경찰청장은 소관 사무에 따라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, 자치경찰사무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·감독을 받도록 함
- ④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,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

● 경찰조직체계



09. 지방자치법 (2022.1.13.시행)

9-1. 특별자치시의 단층화

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

종전	개정
① 지방자치법 :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 (군과 자치구)를 두도록 함 ② 세종특별자치법 : 세종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	지방자치법상으로도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 (군과 자치구)를 두지 않도록 함

9-2.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화

종전	개정
일률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둘 (기관대립형)	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(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)을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함

9-3.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

종전	개정
사무처리의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규정이 없었음	사무처리의 기본원칙 규정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: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;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

9-4.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규정 개정

종전	개정
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	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

9-5. 주민조례개폐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

종전	개정
법적 근거 및 청구절차,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	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, 청구대상,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

9-6.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

종전	개정
규칙 제·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제도 없었음	주민은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·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⇨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.

9-7.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

	종전	개정
감사청구 연령	19세이상 주민	18세이상 주민(외국인 포함)
연대서명 인원	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·도 : 5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: 3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: 200명	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·도 :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: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: 150명
감사청구 시효	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	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3년

9-8.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

종전	개정
단체장이 사무직원 인사권 등 행사	사무직원에 대한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함

9-9.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

종전	개정
규정 없었음	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 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둠

9-10.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정명령 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

종전	개정
시·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없었음	<p>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명령·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·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·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, 시·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·처분에 대한 취소·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</p> <p>주무부장관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·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</p>

9-11. 특례시(인구100만 이상)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

종전	개정
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외에는 특례규정이 없었음	<p>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존 특례 뿐 아니라</p> <p>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특례시)에도 특례 인정 * 자치분권법상 9개 특례 인정(부시장 2인 등)</p> <p>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·군·구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* 특례는 법률로 정함</p>

9-12. 지방의회 의안발의 요건의 자율화

종전	개정
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1/5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	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 수 이상의 찬성

9-13.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 등 구체적 규정 마련

종전	개정
특별자치단체를 인정만 하고 구체적인 규정 없었음	<p>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설치절차, 규약, 구성 등 구체적 규정 신설</p> <p>① 성격 : 법인</p> <p>② 설치 :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부장관 승인</p> <p>③ 기관 :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둘(조직·운영 등은 규약) - 지방의회 : 구성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(겸직 가능) - 특별자치단체장 : 지방의회에서 선출(구성자치단체장이 겸직 가능)</p> <p>④ 설립과 해산 :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자치단체의 설치나 해산, 규약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</p> <p>⑤ 구역 : 구성 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봄</p> <p>⑥ 경비 : 구성 자치단체가 분담</p>

● 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

	지방자치단체조합	특별지방자치단체
목적	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	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
승인	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	행정안전부장관
법인 여부	법인	법인
조직	·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· 지방자치단체조합장 * 조합장 : 규약에 따라 선출(경직가능)	·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· 특별지방자치단체장(집행기관) * 특별자치단체장 : 의회에서 선출(경직가능)
조례제정여부	불가	가능
경비	-	특별회계로 운영(경비분담)
설립, 해산 명령	명할 수 있다. *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	권고할 수 있다. * 행정안전부장관

10.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(2022.1.13.시행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함.
- ② 협력회의는 대통령, 국무총리,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, 시·도지사, 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단체간 협의체 대표 등으로 구성함.
- ③ 대통령은 협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며, 국무총리와 시·도지사협의회장은 공동부의장이 됨.

11.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(2022.1.13.시행)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청구연령 및 청구요건 등 완화

	현행	개편
청구연령	19세 이상	18세 이상
청구대상	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	지방의회에 직접 청구
청구요건	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: 1/100~1/70 ② 기타 시·군 및 자치구 : 1/50 이상 1/20 이하	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: 1/200 ② 800만~100만 광역단체: 1/150 ③ 50만~100만 기초단체: 1/100 ④ 10만~50만 기초단체: 1/70 ⑤ 5만~10만 기초단체: 1/50 ⑥ 5만미만 기초단체: 1/20
처리시한	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	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